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2년 1월 4일(화) ~ 1월 15일(토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)
제출방법	건본주택 방문접수
수신처	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00-19 (대표번호 1800-3430)
유의사항	-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-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· 용도에 「아파트 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(반드시 본인발급용으로 발급신청)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(본인 직접 계약에 한함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원	본인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·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 발급(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)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)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· 건본주택 비치
		○	복무 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·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		자녀	·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·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기본증명서	자녀	·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 배우자의 전혼자녀 확인 시(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(임신진단서) 제출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
		○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건본주택 비치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의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	·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무허가건물확인서		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
		○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정형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 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*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' (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'으로 발급)]	* 해당직장 * 세무서
	금년도 전직자 / 신규취업자	*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* 재직(취업)증명서(입사일자 기재, 직인날인) -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*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,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*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* 사업자등록증 사본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*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	* 세무서
	신규사업자	*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(등급표시되게 발급) 또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사업자등록증 사본	* 국민연금관리공단 * 세무서
	법인사업자	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* 법인등기부등본	*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호판매원		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* 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(상기 서류는 모두 직인날인된 서류만 인정함) *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)	* 해당직장
무직자		- 비사업자 확인서	* 접수장소

공급유형		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 120% 이하	6,030,161원 ~7,236,192원	7,094,206원 ~8,513,046원	7,094,206원 ~8,513,046원	7,393,648원 ~8,872,376원	7,778,024원 ~9,333,628원	8,162,400원 ~9,794,879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 140%이하	6,030,161원 ~8,442,224원	7,094,206원 ~9,931,887원	7,094,206원 ~9,931,887원	7,393,648원 ~10,351,106원	7,778,024원 ~10,889,232원	8,162,400원 ~11,427,35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 160%이하	7,236,193원 ~9,648,256원	8,513,047원 ~11,350,728원	8,513,047원 ~11,350,728원	8,872,377원 ~11,829,835원	9,333,629원 ~12,444,837원	9,794,880원 ~13,059,838원
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	14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8,442,225원~	9,931,888원~	9,931,888원~	10,351,107원~	10,889,233원~	11,427,360원~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 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 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*)(N-8), 100%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비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 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